

사이버 무역시대의 TradeCard 결제시스템에 관한 고찰

전순환*

요 약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중의 하나인 TradeCard의 특징과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시스템하에서 운영되는 무역거래절차를 분석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서론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롭고 다양한 대금결제방식의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대금결제방식인 신용장의 방식의 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 비율은 7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많고, 신용장의 개설과 매입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적지 않아 신용장거래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센터협회(WTCA)는 1994년 이래 TradeCard라는 명칭으로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 하려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TradeCard 시스템의 개발은 1970년에 창립되어 100개국 이상 337개 세계무역센터 및 전 세계 50만여개의 무역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세계최대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가

중심이 되어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999년 2월부터는 EM Warburg Pincus & Co.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목적으로 5,3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TradeCard사(TradeCard Inc.)"라는 독립법인으로 출발하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adeCard사는 캐나다, 홍콩, 대만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홍콩·타이완·싱가포르 등에서도 온라인 무역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radeCard는 기존 신용장(L/C) 방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거래방법을 간소화하고, 각종 선적서류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이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TradeCard는 전자적인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전자적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무역관습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무역거래를 이행하고 결제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비용효과 및 사용자 편의의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무역결제시스템중의

* 중부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하나인 TradeCard에 대하여 전개과정과 특징 및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고, TradeCard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거래과정을 고찰한 다음, TradeCard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TradeCard의 일반적 고찰

2.1 TradeCard의 의의

2.2.1 TradeCard의 개념

TradeCard는 인터넷상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국제무역거래를 안전하게 이행하고 결제하도록 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반구조로서, 기존의 신용장거래가 갖는 단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적인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전자적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무역관습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무역거래를 이행하고 결제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비용효과 및 사용자 편의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¹⁾

이 시스템은 세계무역센터협회(WTCA)²⁾가 개발한 전자무역방식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선적서류 등 관련 무역서류를 자동으로 작성,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처리하는 자동화 인터넷 무역서비스다. 즉, 매수인, 매도인 및 이종의 무역서비스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Trade-

Card의 해결책은 시간을 소비하고 비용이 드는 종이기반의 복잡한 현재의 무역거래절차를 자동화하고 합리화한다.

TradeCard는 수출입거래에 신용카드 기능과 인터넷을 접목시킨 것으로, 대금결제를 맡는 신용카드회사격인 TradeCard 운용본부를 사이에 두고 수출입업자들이 거래를 하게 된다. 즉,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TradeCard사가 제공하는 전자구매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수입업자는 담보 제공없이 TradeCard사 제휴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금액한도내에서는 신용장 개설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발급받은 TradeCard로 주문을 내고, 수출업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선적서류 등 모든 수출 관련서류를 TradeCard 운용본부 앞으로 직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송하고, TradeCard 운용본부는 최초 구매서와 운송서류를 자동적으로 검사한 후 서류가 일치하면 수입업자 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해 수입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만 확보하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TradeCard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국제무역거래를 이행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세계 전자무역상거래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adeCard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신용장 방식 무역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 점검절차를 자동화해 신용장을 대체하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서류점검에 해당하는 기능을 TradeCard 시스템이 수행하고 은행은 단순히 자금 공여만을 담당하게 된다.

1) <http://www.tradecard.com/resources/faqs.html>

2) WTCA는 전세계로부터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모집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에 창립된 민간부문 세계 최대의 무역기구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 337개 이상의 세계무역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산하 회원업체가 50만개사에 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972년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2.2.2 TradeCard의 전개과정

신용장의 방식의 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 비율은 7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많고, 신용장의 개설과 매입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적지 않아 신용장거래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센터협회(WTCA)는 1994년 이래 TradeCard라는 명칭으로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 하려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시스템의 개발은 1994년부터 독립기업인 WTCA Services Corp.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³⁾ 즉, TradeCard 시스템의 개발은 1970년에 창립되어 100개국 이상 337개 세계무역센터 및 전세계 50만여개의 무역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세계최대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가 중심이 되어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1999년 2월부터는 EM Warburg Pincus & Co.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목적으로 5,3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TradeCard사(TradeCard Inc.)”라는 독립법인으로 출발하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TradeCard사는 캐나다, 홍콩, 대만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홍콩·타이완·싱가포르 등에서도 온라인 무역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WTCA가 창설한 TradeCard는 와버그, 네트워크 회사인 GEIS(GE Information Services), Marsh & McLennan,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미쯔이, 미쯔비시, 토마스록, Coface 등이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Sedgwick, 은행업무 서비스를 담당하는 BOA

(Bank of America), 국제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ABN-AMRO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 TradeCard의 연혁

년도	내용
1994년	세계무역센터협회(WTCA)에서 TradeCard 구상
1997년	TradeCard 정식 설립
1998년	TradeCard 시스템이 미국 특허 및 상표 관리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으로부터 특허 #5,717,989 획득
1999년	E.M. Warburg Pincus사의 지분참여로 독립회사 설립
2000년	TradeCard의 웹기반 서비스 개시
2001년	일련의 금융관리 및 결제제품을 호스팅하는 단일의 금융공급체인 플랫폼 제공

자료: <http://www.tradecard.com>

TradeCard사는 기업간거래(B to B)를 주체로 한 전자상거래기업으로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TradeCard는 <http://www.tradecard.com>으로 월드와이드웹상에서 발견될 수 있다. 국제 무역업계에 있어서 간이하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수출입업자에 대해서 On-Stop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TradeCard사는 특허화된 독자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서류점검 및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전세계의 무역업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무역거래가 완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radeCard사의 서비스는 점점 증가하는 B to B 비즈니스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발굴하는 거래교섭을 행하는 단체(Community)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완결시키기 위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에 추가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기존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TradeCard의 서비스는 유익하다.

3) D. Biederman, Here Comes TradeCard, Traffic world, Vol.257, Iss.10, March 8, 1999, p.25.

2.2.3 TradeCard의 추진동향

TradeCard는 현재 미국을 비롯,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온라인 무역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Funder로서 National Bank, ABN AMRO, Royal Bank of Canada, Societe Francaise de Factoring Paris, Hong-Kong Bank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Sedgwick, 운송회사는 Jealan Distributors Inc. 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은행은 National Bank, Royal Bank of Canada, ABN AMRO, CHASE, SFF, SELLS PARGO, Huntington, Bank of America, BLADDEX 등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TradeCard는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각각 투자법인을 설립했다.

“TradeCard코리아(TradeCard Korea)”를 설립하기 위한 조인식을 가졌으며, TradeCard코리아의 초기 자본금은 100만달러 규모로, 세계무역센터인포텍(WTCI)이 20%, LG상사와 SK글로벌이 각각 16%의 지분을 출자하고 TradeCard 본사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다. 즉, TradeCard코리아는 LG상사, SK상사, 세계무역센터인포텍(WTCI) 등과 공동 출자형식으로 설립됐으며, 조흥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도 업무 제휴를 맺었다.

현재 트레이트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업체는 LG상사·SK글로벌·삼성물산 등이며, 한국산업은행이 WT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마트 회원 기업에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표 2-2〉 TradeCard의 참여업체

기관	업 체 명
지급보증기관	Coface
결제금융기관	Thomas Cook
Logistics Service Providers	Fritz Co., DHL, AWLN(Associated World Logistics Network: 미국), ITI(Intermodal Terminal Inc.: 미국), YKL Logistics Co. Ltd., Topocean Group, JSI, Trans-Pak, Sino Transport Co. Ltd.(대만)
Inspection Service Providers	SGS
Cargo Insurance	Marsh(영국)
Trade Finance	FleetBoston Financial(미국), Comerica Inc.(미국), Bank SinoPac(華信商業銀行: 대만), Dah Sing Bank(大新銀行: 홍콩), First Commercial Bank(第一商業銀行: 대만), Chinatrust Commercial Bank(대만), Chohung Bank(조흥은행: 한국), UWCCB(United World Chinese Commercial Bank: 대만)
Country Managers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td.(홍콩), ITPII(Information Technology Pioneer International Inc.: 대만)

한편,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대금결제를 비롯한 무역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TradeCard사는 2000년 8월 2일에 서울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SK글로벌·LG상사·세계무역센터협회(WTCA)의 관계사인 세계무역센터인포텍(World Trade Center InfoTech; WTCI) 등과 지분을 공동출자하여 한국내 합작법인인

TradeCard 시스템은 국내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 무역 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기존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없이 온라인 상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 졌다.

2.2 TradeCard의 특징

TradeCard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adeCard 시스템은 기존의 화환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 방식을 배제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한 결제방식이다.

즉, TradeCard 시스템은 기존에 행해지던 신용장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및 점검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며 은행에게는 자금공여만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서류를 근간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을 배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무역결제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서류중심의 신용장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전자화하는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화시대의 결제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결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TradeCard 시스템은 모든 무역거래절차를 전자화하였다.

TradeCard 시스템은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이행여부의 확인, 대금지급을 통한 무역계약의 종료 등 모든 무역거래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현재, TradeCard는 구매주문서,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모든 운송방식에 대한 선화증권을 포함하여 전자적 포맷으로 13가지 서류를 후원하고 있다.⁴⁾

셋째, TradeCard 시스템을 경유하는 메시지는 UN/EDIFACT 표준과 RSA 방식의 공개키암호화 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TradeCard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전자적 계약의 확인, 계약이행여부의 확인, 대금지급여부의 결정 등 모든 무역거래절차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적 문서와 계약서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전자문서교환의 표준은 UN/EDIFACT에 따르고 있고, 암호체계도 R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 무역절차를 전자문서화하고자 1994년부터 SWIFT와 TT Club이 추진하고 있는 Bolero Project와 동일하다.

넷째, TradeCard 시스템은 개방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 즉, TradeCard사와 다국적 지급제공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기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다섯째, TradeCard 회원은 검사서비스를 위한 계약, 수출전후의 금융서비스를 위한 계약, 적하보험 및 기타 부가가치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섯째, TradeCard사가 신용카드사의 역할을 맡아 무역거래를 신용거래로 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신용장 발행은행의 서류점검에 해당하는 기능을 TradeCard 시스템이 수행하고 은행은 단순히 자금의 공여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곱째, TradeCard는 사용자들이 연회비 250달러와 거래 건당 비용 150달러를 지불토록 하고 계약일치의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을 대행해 준다.

여덟째, TradeCard의 사용계층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무역거래를 이행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모두 포함된다.

4)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4권, 2000. 8, pp.246-251.

〈표 2-3〉 TradeCard의 특징

금융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국제 온라인 무역거래 가능 *온라인 지급의 편리성과 지급보증을 결합 *미화 10만불 이하일 경우 결제거래당 미화 150불의 고정 수수료. 미화 10만불 초과시 차등적인 추가수수료 부과 *매수인과 매도인이 추가비용없이 온라인으로 거래조건을 승인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금의 차기(debits) 및 대기(credits) 가능
기능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벽한 온라인거래 가능 *서류 일치성 점검엔진(compliance engine)의 특허 보유 *물류제공자, 검사 대리인, 적화보험, 신용금융 및 외환서비스 연계 *온라인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승인한 서류를 게시하고, 전거래의 진행상황의 추적 및 데이터의 정확성 개선 *매수인, 매도인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계별 업무목록(task list)을 제공 *128비트 암호, 디지털 서명 및 two-factor user ID 시스템으로 보안 확립

자료: <http://www.tradecard.com>

2.3. TradeCard의 경제적 효용성

TradeCard의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당사자들은 신용장, 상업송장 등 각종 선적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필요없이 전용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주고 받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TradeCard는 인터넷을 통해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 송신은 물론 보험·결제·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서비스로서, 무역업무 처리시간을 최대 80%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둘째, TradeCard는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서 거래과정이 전산망으로 일괄처리되는 전자무역시스템으로서, 통신망은 인터넷 대신 미국 GE가 개설하는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수출입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출입업자 상호간의 신뢰도 검증에 대한 어려움, 대금결제의

불능 및 대금지급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지만, TradeCard는 기업 신용도 측정을 위하여 선진국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고, 거래과정을 인터넷 대신 미국 GE가 개설하는 전용망으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크게 보완되었다.

셋째, TradeCard 시스템은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고 전 거래과정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출입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거래당사자들은 신용장이나 수출환어음 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심사나 송부에 필요한 기간만큼 이자를 내야하는 환가료도 필요없기 때문에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이나 업무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로서는 선적서류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환가료 및 신용장관련 수수료를 포기하게 되지만 신용제공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다섯째, TradeCard 서비스를 통해 기존 신용장(L/C) 방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거래방법을 간소화하였다.

즉, 무역거래에 관련되는 많은 절차를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기업과 무역거래에서 신

용장 개설에 따른 은행과의 번거로운 절차 및 수수료를 회피하려는 소규모 무역업체의 경우 매우 선호될 수 있는 결제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

여섯째, 기업의 생산성 및 현금 유동성 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방식, 매수인승인지급(BAP; Buyer Approved Payment)방식, 송장제출(IP: Invoice Presentation) 방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4〉 TradeCard의 장점

장 점	
매도인	기존의 LC업무와 비교하여 낮은 비용 빠른 현금 확보 전자문서, 전자계약서 EDI를 사용함으로써 정확성, 효율성 증대 중개인없이 무역업무 즉시 처리 지불의 보증 확보로 보다 나은 무역기회 부여
매수인	기존의 LC업무와 비교하여 낮은 비용 내부 업무의 효율성 증대 많은 TradeCard 참여은행으로부터 신용확보 장부 검증 용이 중개인없이 무역업무 바로 처리 전자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성, 일치성 확보
Funder	수익증대 경쟁력 향상 보다 많은 고객 확보 세계무대에서의 명성, 역량 강화 중소기업시장, 무역금융시장으로의 영업확대
운송주선인	빠른 수수료 수금 고객 확충 경쟁력 향상

III. TradeCard 서비스와 무역 거래절차

3.1 TradeCard의 서비스내용

TradeCard사는 대금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동승인지급(AAP; Auto Approved Payment)

3.1.1 자동승인지급(AAP)방식

자동승인지급(AAP; Auto Approved Payment) 방식은 TradeCard사의 제휴기관인 Coface로부터 매수인의 신용평가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TradeCard사가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인 전자결제방법이다.

이 방식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작성되어 TradeCard사로 전송된 구매주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시작되고,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 TradeCard사로 전송되면, TradeCard사의 데이터 일치성 점검엔진은 이들 서류를 자동으로 점

5) 안병수,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System,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p.966.

검하여 서류의 일치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결제금융기관인 Tomas Cook을 통하여 매수인의 계정에서 차기(debit)하여 매도인의 계정으로 대기(credit)함으로써 대금지급이 완료된다.

이 방식은 Coface라는 지급보증기관이 매수인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신용장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⁶⁾

3.1.2 매수인승인지급(BAP)방식

매수인승인지급(BAP; Buyer Approved Payment) 방식은 자동승인지급(AAP)방식과 거의 유사하지만, 지불할 때의 최종결정은 매수인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다.⁷⁾ 즉, 이 방식은 AAP 방식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거래에 수반된 각종 서류가 TradeCard사의 데이터 일치성 점검엔진을 통하여 모든 일치성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매수인이 지급인증서류에 승인하여야만 대금지급이 행해지는 방식이다. 데이터 일치성 점검엔진에 의하여 모든 일치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AAP방식에서는 TradeCard사가 지급절차를 시작하는 반면, BAP방식에서는 매수인이 지급인증서류를 승인하여야만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이 방식은 현행의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의 처리기능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서, 매수인이 언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3.1.3 송장제출(IP)방식

송장제출(IP: Invoice Presentation)방식은 국내외에서 선적된 물품 또는 부여된 서비스에 대하여 송장을 보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으로

서, 지급보증이나 데이터 일치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거래절차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매도인이 TradeCard의 시스템에서 송장을 생성함으로써 시작하며, 송장이 완성되면 송장에 전달된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승인서류가 생성된다. 이 경우 매수인이 그 특정 송장에 관하여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매수인의 계정은 약정된 지급일자에 차기(debit)된다.

3.2 TradeCard의 회원가입

3.1.2 회원요건

TradeCard의 사용자는 크게 매도인과 매수인인 거래당사자, 서비스제공자 및 무역거래 지원기관으로 구분된다. 서비스제공자에는 물류서비스 제공업자, 검사서비스 제공업자,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무역거래 지원기관에는 지급보증을 담당하는 Coface와 결제금융기관인 Thomas Cook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이 TradeCar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TradeCard의 회원가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⁸⁾

① 회원가입의 자격

매도인과 매수인은 TradeCard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TradeCard는 캐나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일본에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 TradeCard는 매도인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이 점에 있어서, AAP방식은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보증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보증기관이 2차적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신용장방식은 매수인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1차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7) <http://www.tradecard.com/Product/TransactionTypes.html>

8) <http://www.tradecard.com>

〈표 3-1〉 AAP, BAP 및 IP방식의 비교

	AAP방식	BAP방식	IP방식
거래의 개시자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최초의 문서	구매주문서	구매주문서	상업송장
지급 결정권자	일치성 점검엔진	매수인	매수인
지급보증의 유무	매수인의 @rating 한도내 송장금액만큼 지급보증	매수인의 @rating 한도내 송장금액만큼 지급보증	지급보증 없음
데이터의 일치 여부	이용가능	이용가능	불필요
워크플로우 메시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무역지원서비스	이용가능	이용가능	-

한편, TradeCard의 사용계층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회원사의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한 회원사가 얼마나 만족해하며, 얼마나 많은 거래를 TradeCard 시스템으로 결제하는가가 중요하다.

② 회원가입의 구비요건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TradeCard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요건,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또는 넷스케이프 4.7이 설치된 컴퓨터, 56K 모뎀, 인터넷 접속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3-2〉 TradeCard의 회원신청서의 내용

	요구된 정보	이유
기업 정보	사업자명 및 주소(Business legal name and address)	TradeCard는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다.
	사업자번호(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금융계약정보(Financial contract information)	
은행 정보	Senior management contract information	TradeCard는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과 신청자의 제휴를 검증함으로써 신청서를 인증하여야 한다.
	은행명, 주소 및 ID번호(Bank name, address and ID Number)	TradeCard의 글로벌 결제기관(global Payments provider)인 Tomas Cook은 귀사에 관한 돈세탁방지의 점검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금융 정보	개설된 계정의 이름, 번호 및 일자(Account name, number and date established)	TradeCard의 글로벌 결제기관(global Payments provider)인 Tomas Cook은 TradeCard거래를 위하여 귀사의 계정을 대기 및 차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계정 서명기관 계약정보(Account signatory authority contract information)	
고객 및 매도인 정보	요구 정보 순자산(Net Worth)	TradeCard의 신용공여기관(credit Provider)인 Coface는 귀사가 TradeCard 네트워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귀사의 평가(@rating)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선택 정보 매출액(Sales)	
	세금공제순수익(Net income after taxes)	
	총자산(Total assets)	
	Ending inventory	
매수인 용	Working capital(current assets less current liabilities)	적용가능한 경우, 5개의 주요 구매자와 귀사의 수취가능한 평균부채(average outstanding)를 제공해 주시오.
	3개의 주요 매도인(vendor)과 귀사의 지불가능한 평균부채를 제공해 주시오.	

TradeCard는 모든 신청자에게 현재의 상세한 회사, 은행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TradeCard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Apply Online 또는 Apply by Mail).

신청서에 있는 정보는 신청자에 대한 회원자격의 결정에 도움이 되며, 신청자에게 신뢰된 온라인 금융결제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TradeCard시스템과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이름이 요구된다.

TradeCard는 신청자가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기재된 신청서 요건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TradeCard의 회원신청서는 기업정보, 은행정보, 금융정보, 고객 및 매도인(vendor)정보 등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3.2.2 회원의 권리

① 개인정보보호

TradeCard 시스템은 128비트 통신 암호화를 제공하는 VeriSign™ Global Secure Site Certificate에 의해 보호된다. 게다가 TradeCard는 모든 신청자 및 회원정보에 관한 privacy and confidentiality policy을 가지고 있다.⁹⁾

TradeCard는 회원이 특별히 또는 알면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회원이 TradeCard로부터 정보를 요구한다면, 회원은 자신의 이름, 회사, 타이틀, 국가 및 E-Mail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산업 및 평균거래규모와 같은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도 순수하게 자발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TradeCard는 개인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떤 제3자에게 판매, 거래 또는 임대하지 않을 것이다. TradeCard는 추가적인 정보나 장래의 우편물에 대하여 회원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만일 회원이 장래의 우편물 수취를 탈퇴하고자 한다면, unsubscribe@tradecard.com에 대한 주체라인에서 “갱신금지(no-updates)”를 언급하는 회원의 이름과 함께 E-mail을 TradeCard에게 송신하시오.

TradeCard의 법인 웹사이트는 회원의 브라우저에 놓여진 작은 텍스트파일인 “쿠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TradeCard의 시스템은 회원의 컴퓨터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몇가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로그한다.¹⁰⁾

- IP 주소(회원의 컴퓨터의 유일한 서명)
- 운영시스템(즉, 윈도우 NT)
-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즉,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TradeCard는 루틴 웹사이트 유지를 이행하거나 종합 웹사이트 교통보고를 생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래서 TradeCard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TradeCard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확인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귀사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TradeCard의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방문자는 어떤 잘못을 정정하기 위하여 TradeCard 회원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다.¹¹⁾

9) <http://www.tradecard.com/resources/faqs.html>

10) <http://www.tradecard.com/privacy/policy.html>

11) <http://www.tradecard.com/privacy/policy.html>

② 부가가치서비스의 이용

TradeCard 회원은 물류, 적하보험, 검사 및 수출 전후의 금융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당사자에 대한 접근을 가진다.

3.3 TradeCard 시스템을 통한 무역거래절차

TradeCard에 의한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매수인, 매도인 및 서비스제공자로서, TradeCard에 의한 무역거래절차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TradeCard를 사용하고 자 하는 사용자들이 사용자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TradeCard 시스템에 의한 무역거래의 이행단계이다.

3.3.1 사용자 신청

특허받은 TradeCard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TradeCard의 회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매수인과 매도인은 TradeCard 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TradeCard로부터 회원승인을 받는다. 사용자들은 최초의 “사용자계약(User Agreement)”에 잉크로 서명한 뒤 이후에는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된다.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TradeCard가 당사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구된 거래와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TradeCard 회원신청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명세는 신청서 부문을 참조할 것).¹²⁾

12) <http://www.tradecard.com/resources/faqs.html>

② 매수인과 매도인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TradeCard 회원서비스의 도움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주가 될 것이며, 회원승인과 동시에 회원자격과 교육자료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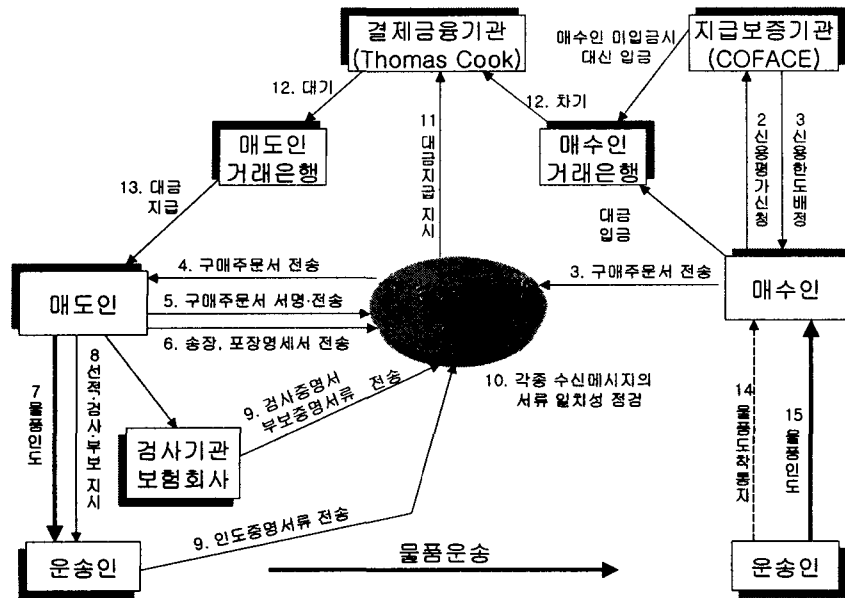
③ TradeCard의 비용으로서, 250달러의 년회비와 함께, 10만달러 이하의 무역거래인 경우에는 건당 150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내면 제반 거래가 가능하며, 10만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차등적인 수수료가 부과된다.

3.3.2 신용한도의 설정

매수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보증기관에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신용한도를 배정받는다.¹³⁾ 현재 지급보증기관으로는 프랑스의 신용보험회사인 Coface가 참여하고 있다. Coface는 @rating 서비스를 통하여 매수인을 평가하고, 매수인의 @rating 한도까지 송장의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지급보증(Assurance of Payment)을 부여한다. 매수인이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Coface는 부보된 선적금액까지 매도인에게 상환한다(Coface @rating에 대한 명세는 www.cofacerating.com을 참조할 것).

한편, 결제금융기관은 토마스 쿡(Tomas Cook)이 담당한다. 결제금융기관인 토마스쿡이 선적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보증기관인 Coface가 대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은 제3의 신용보험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13) 자동승인지급(AAP) 및 매수인승인지급(BAP)방식에서는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한도를 배정받아야 하지만, 송장제출(IP)방식에서는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림 3-1) AAP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절차

3.3.3 무역거래의 이행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역거래조건을 협상 및 합의한 후, TradeCard 시스템에 의하여 합의한 무역거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매수인은 계약조건(매도인이 승인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명시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P/O)¹⁴를 작성해서 디지털서명을 첨부하여 TradeCard사의 중앙처리장치(System Administrator; SA)로 송신한다.

이 경우 구매주문서는 TradeCard 시스템상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의 ERP 시스템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에서

전자파일로 송신할 수 있다.

② TradeCard의 SA는 구매주문서를 안전한 독점 데이터베이스(proprietary database)에 저장한 후, 구매주문서의 기재내용과 함께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한도를 검토한 후 구매주문의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③ 매도인은 이를 확인하여 전자서명후 트레이트카드 SA로 송신함으로써 무역계약을 체결시킨다.

즉, 매도인은 구매주문서를 전자적으로 승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매수인과 협상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구매주문서의 조건에 합의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구매주문서는 디지털서명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④ TradeCard는 독점데이터베이스에 승인된 구매주문서를 저장한다.

양자간에 상담이 성립한다면, 매도인은 정식

14) 이 서류는 매도인이 승인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구매주문서는 TradeCard의 안전한 독점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구매주문서로부터의 데이터는 모든 거래서류상의 정보가 유효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송장과 구매주문서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으로 구매계약의 조건을 승인하고, 구매주문서는 TradeCard의 안전한 독점 데이터베이스(secure and proprietary database)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

⑤ 매도인은 TradeCard SA에 선적지시서(선적, 보험, 검사관련 지시서)를 발송한다.

즉, 매도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선적지시서를 한다.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검정회사에게는 검사지시, 적화보험자에게는 보험부보의 지시서를 한다. 한편, TradeCard 사용자는 검사서비스, 적화보험, 기타 부가가치 무역서비스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⑥ 매도인은 전자파일에 의하거나 TradeCard가 제공하는 도구(tool)를 이용하여 TradeCard 시스템에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저장시킴으로써,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TradeCard에 제공한다.

즉, 구매주문서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시점에서 매수인이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 매도인이 서류의 일치성 점검후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송장에 첨부된다. 이 시점에서 매도인은 제3자 신용보증인으로부터 지급의 보증을 획득할 수 있다.

⑦ 운송주선인은 전자서명된 최종 운송서류¹⁵⁾를 작성해 TradeCard 시스템으로 송신한다. 필요한 경우(구매주문서에서 검사 또는 보험부보를 요구한 경우), 검정회사는 물품을 검정한 내용을, 적화보험자는 적화보험의 부보내용을 TradeCard SA에 송신한다.

이러한 이행단계 중 언제라도 일방 당사자는 원본 구매주문서에 대해 수정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양 거래당사자의 전자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⑧ TradeCard는 제3자 물류제공자로부터 인도의 증거를 전자적으로 획득한다.

⑨ TradeCard SA는 운송서류를 비롯한 다른 전자식 서류들과 POPFI¹⁶⁾를 대조·점검한다.

즉,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제출되면 TradeCard의 특허를 가진 일치성 점검엔진(Compliance Engine)이 구매주문서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및 기타 전자서류를 비교해 필요한 모든 거래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자동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여기서 서로 다른 사항이 발생(불일치)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⑩ TradeCard SA는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신용공여기관에게 대금지급을 할 것을 수권한다. 만일 기한부지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급단기일까지 지급지시를 보류한다.

⑪ 신용공여기관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에서 매수인이 사전에 입금한 자금을 차기(Debit)하여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대기(Credit)한다.

즉, 서로 다른 사항들이 해결되고 모든 사항이 충족되어졌을 때 다국적 지급 제공자가 매수인의 금융기관에서 매도인의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함으로써 거래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다국적 지급제공자의 외환 서비스(외국통화교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⑫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신용공여기관에 상환하면 거래한도가 회복된다.

⑬ 매수인은 전자운송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물품을 인도받는다.

15) 이 운송서류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전자해상화물운송장, 전자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전자선화증권 등이다.

16) Purchase Order/Pro Forma Invoice(구매주문서/견적송장)의 약자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전자거래계약서가 된다.

IV. 결론

사이버무역시대의 새로운 전자무역결제방식으로, TradeCard의 서비스 내용과 그 경제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TradeCard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국제간의 무역을 전자화함으로써 수작업과 서류중심의 기존의 무역거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거래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TradeCard는 무역결제를 전자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TradeCard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는 연회비 250달러와 함께, 거래 건당 결제금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균일하게 1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로서는 이러한 건당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액수이며, 신용장거래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니다. 반면, TradeCard는 5만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때 보통 500-1500달러의 제반 거래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150달러는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해외의 많은 사용자와 국내의 무역유관기관이 가입하기 전까지는 가입의 실익이 적다.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방식을 사용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과 비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

지는 가입의 실익이 적다.

현재 무역거래의 국내 프로세스만을 전자화한 무역자동화망에도 국내 무역업체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인력, 제도적 뒷받침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TradeCard에 가입해 사용할 사용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 거래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한 승인절차문제와 무역업체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블레로와 TradeCard를 사용하여 무역거래를 이행한 후,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 및 관습적인 대책이 없다.

블레로와 TradeCard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와 분쟁해결사례가 없어 무역관습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결제방식의 한 형태인 TradeCar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결제방식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결제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가입의 실익을 극대화하여야 하고,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 제14권, 2000. 8.
- 안병수, 국제전자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System,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 Barry Morse, Two Web Trade Systems Ready for Launching, American Banker, September 24, 1999.
- D. Biederman, Here Comes TradeCard, Traffic world, Vol.257, Iss.10, March 8, 1999.
- Helen Atkins, New options from TradeCard, Journal of Commerce Week, March 26-April 1, 2001.
- Ken Cottrill, TradeCard's Here, trafficWorld, April 10, 2000.
- Lara L. Sowinski, Web-Based Financial Settlement Comes of Age-Privacy and security concerns are no longer valid in many cases-; http://a136.g.akamai.net/7/136/1164/dbe69db45c7173/www.tradecard.com/News/Articles/WorldTrade_040101.pdf
- Richard H. Gamble, Rewriting the Letter of Credit, Business Finance, November 2001.
- <http://www.tradecard.com>
- <http://www.tradecard.com/privacy/policy.html>
- <http://www.tradecard.com/Product/TransactionTypes.html>
- <http://www.tradecard.com/resources/faqs.html>

A Study on the TradeCard Payment System in the Cyber Trade Era

Soon-Hwan, Jeon*

Abstract

The international trade industry is on the brink of a radical Internet-driven transformation. TradeCard is a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hat is an alternative to letters of credit. That is, TradeCard is a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infrastructure that enables buyers and sellers to conduct and settl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securely over the Internet.

Paperless, payment-guaranteed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 which eliminate the traditional letters of credit with electronic certifications - are widely considered the most difficult B2B transactions to conduct. The TradeCard system was initially built to accommodate and process this complex, cross-border payment type at a US\$100 service fee for each transaction of up to US\$100,000 since November 1999.

* Dept.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Joongbu University.